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내 용

1. 2인이상 견적입찰이 아닌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과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입찰에 부치고,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추정가격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이하 “견적입찰”이라 한다)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재단에서는 동 법인 산하 ○○○○요양원 요양사실 확충공사 명목으로 23,408,000원을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도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의 견적입찰을 하지 않고 1인 견적

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¹⁾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사설전자입찰로 공고하는 등 입찰공고 방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사회복지재단에서는 동 법인 산하 ○○○요양원(노인복지시설)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사설전자입찰전문업체인 (주)○○○○(○○시 ○○○구 소재)에서 운영하는 ○○○○(<http://○○○.○○○○○○○○○.○○>)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2개 업체만 응찰하였다.

이와 같이 동 공사의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 법령에 어긋나게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동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들이 입찰 및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또한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02호)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pm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多추첨된 4개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그런데 위 법인은 기초금액(119,880,000원)을 근거로 사설정보처리장치(○○○○○○)에 게시함으로써 2개 입찰참가업체 중 (주)○○○○건설에 낙찰 하
한율을 훨씬 상회하는 99.68%에 낙찰결정(119,500,000원)함으로써 아래 [표]와
같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될 수 있는 낙찰 예정가 87.745%보다 최대 약
12%(14,311,294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아산시JPC 요양원 증축공사 계약 현황

(단위: 원)

공사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A)	낙찰예정가 (B)	손실액 (A-B)
아산시 ○○○요양원 증축공사	2014. 10. 14. ~ 2014. 11. 10.	119,500,000	105,188,706	14,311,294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장, 아산시장은

[통보]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 및 절
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자체관리방
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